법원 공보

2025.01.01. **제 1703**호



목차

• 신법령 -	목록	ī	29
• 예규	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법원 홈페이지 관리 ·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1	12 23
.11 -7			
	제안내규 일부개정내규(대법원내규 제575호)	-	9
	제안내규 일부개정내규(법원행정처내규제134호)	-	6
• 내규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ı	5
• 규칙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ı	4



◆ 2025년도 대법원 시무식

2025년도 대법원 시무식이 2025. 1. 2.(목)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대법원장, 대법관, 재경 각급 법원장, 재경 각급 법원 판사 및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규칙

◎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3179호 2024. 12. 13. 공포)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보좌관제도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유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단장은 법관 또는 2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 ③ 부단장은 4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 1. 사법보좌관제도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실시
- 2. 사법보좌관제도 연구 및 연구결과의 분석 · 평가
- 3. 전국 사법보좌관 업무지원 및 간담회 개최
- 4. 그 밖에 연구 · 업무지원 자료의 수집,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협조요청)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임사항)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규

◎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법원행정처내규 제133호 2024. 11. 29. 결재)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부서)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에 설치한다. 제3조(추진단의 운영) ① 단장은 추진단의 사무를 관장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단장은 사법보좌관제도발전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의 허가를 받아 추진단 내에 단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팀을 구성할 수 있다.
- ③ 추진단 내에 설치된 팀의 팀장은 단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팀원을 통솔하며 팀에 부여된 임무를 처리한다. 제4조(추진단 업무의 보고 및 심의) 단장은 매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추진단의 주요 업무와 그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안내규 일부개정내규

(법원행정처내규 제134호 2024. 12. 12. 결재)

제안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1조 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제5장에 제21조를 같은 장 제22조로 하고, 제6장에 제22조를 같은 장 제23조로 하며, 제7장에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같은 장 제24조 및 제25조로 하고, 제8장에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제26조 및 제27조로 하며, 제5장에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법원행정처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사상의 특전부여 기준표

창안등급	인사상 특전의 종류	특 전 대 상
금상	특별승진	-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 연구사
은 상 특별승급		- 별정직공무원 - 특별승진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동상	특별승급	- 일반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 ※ 인사상 특전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법원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 ※ 위 표의 인사 특전 부여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제안자에게는 성과 평가 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6조(심의사항) 제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신 설〉

4. (생략)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신 설〉

제21조(생 략)

제6장 권리의 국가승계

제22조(생략)

제7장 채택제안의 실시와 사후관리

<u>제23조</u>(생 략)

제24조(생 략)

제8장 보칙

제25조(생략)

제26조(생략)

711	ΩL
	 <u> </u>
7 II	

제6조(심의사항)
1. ~ 3. (현행과 같음)
4. 제21조 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장
제21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법원행정처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제22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

제23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제7장 -----

제24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제25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제8장 ----

제26조 (현행 제25조와 같음)

제27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 제안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575호 2024. 12. 12. 결재)

제안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1조 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제5장에 제21조를 같은 장 제22조로 하고, 제6장에 제22조를 같은 장 제23조로 하며, 제7장에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같은 장 제24조 및 제25조로 하고, 제8장에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제26조 및 제27조로 하며, 제5장에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법원행정처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사상의 특전부여 기준표

창안등급	인사상 특전의 종류	특 전 대 상
금상	특별승진	-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 연구사
은상		- 별정직공무원 - 특별승진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동상	특별승급	- 일반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 ※ 인사상 특전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법원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 ※ 위 표의 인사 특전 부여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제안자에게는 성과 평가 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6조(심의사항) 제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신 설〉

4. (생략)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신 설〉

제21조(생 략)

제6장 권리의 국가승계

제22조(생 략)

제7장 채택제안의 실시와 사후관리

제23조(생략)

제24조(생 략)

제8장 보칙

제25조(생략)

제26조(생략)

개 정 안

제6조(심의사항)	

1. ~ 3. (현행과 같음)

4. 제21조 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장 -----

제21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법원행정처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제6장 -----

제23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제7장 -----

제24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제25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제8장 ----

제26조 (현행 제25조와 같음)

제27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예규

◎ 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대법원행정예규 제1413호 2024. 12. 24. 결재)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채용비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법원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채용전형 관리자 또는 직접 관리하거나 채용전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이 합격 또는 불합격하도록 하기 위하여 채용에 관한 법령· 내부 규정 및 채용공고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
- 나. 법원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채용전형을 관리하는 자에게 가목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
- 2. "부정합격자"란 이 예규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예규는 법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규채용에 적용한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따른다.

제2장 채용 원칙

- 제4조(채용의 기본원칙)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신체조건·출신 지역·학력·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채용할 수 있다.

- ③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고,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의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제5조(채용담당부서의 의무) ①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담당부서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공 고를 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채용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응시원서 등 채용전형 관련 서류를 해당 서류가 보관된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되며, 검수·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보관된 시설 내부에서 이를 실시해야 한다.

제3장 채용절차

- 제6조(채용공고)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채용 법원 홈페이지 등 국민들의 접근이 가능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 1. 채용예정인원
 - 2. 업무내용
 - 3. 채용자격기준
 - 4. 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
 - 5. 수습기간 설정
 - 6. 채용일정 및 채용방법
 -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8.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사항
 - ②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 ③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서접수마감일 3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채용공고의 생략)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1. 채용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예비합격 후보자를 추가합격자로 선정하는 경우
- 2. 정년에 도달한 공무직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 4. 한시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6개월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 5. 신속한 결원보충,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6.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 제8조(채용자격조건)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채용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9조(장애인 고용) ① 채용권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채용권자는 장애인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만 해당 채용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 그 실시 대상 직무의 종류 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 제10조(원서접수)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 1. 응시원서
 - 2. 자기소개서
 -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4. 그 밖에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공정채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채용권자가 요구하는 서류
 - ② 채용권자는 응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응시원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응시자 본인의 용모 · 키 ·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2. 응시자 본인의 출신지역 · 혼인여부 · 재산
 - 3. 응시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 직업 · 재산
- 제11조(채용절차)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형 및 시험을 실시한다.
 - 1. 서류전형
 - 2. 면접시험
- 제12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응사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 ② 서류전형의 평정요소, 배점 및 평가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하되, 성별, 연령 등 차별적인 요소,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 없는 자격증, 학력 등 불합리한 요소는 배제하여야 한다.
 - ③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법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 제13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한다.
 - ② 면접시험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채점표에 의하여 채점을 실시한 후 집계한다. 다만, 면접시험의 평정요소, 배점 및 평가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 ③ 채용권자는 면접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위원을 대상으로 응시자의 직무수행능력 · 직무수행태도 및 공 정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항과 관련이 없는 성별 · 연령 · 출신지역 · 가족관계 및 출신학교에 관한 차 별적 질문을 하지 않는 등 면접시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 제14조(면접시험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면접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 1. 응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등 시험 실시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
 - 2.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채용권자는 면접시험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면접 시험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용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의 회피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면접시험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면접시험위원은 채용담당부서의 장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시험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15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채용시험 가점기준은 별표 1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 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표 1에 따른 법정 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 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 ④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제16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① 최종합격자는 채용계획 수립 시 정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하여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한다.
 - ② 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 ③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예비합격자 중에서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7조(합격취소 등)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채용비리로 합격한 자
- 2. 채용시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3. 응시원서에 적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 4.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 5. 기타 부정합격자
- 제18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권자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별표 2에 따르되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 제19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다만, 같은 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하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응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 제20조(채용공정성 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과정이 적절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 지 점검을 할 수 있다.
 - ② 채용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점검에 협조하여 채용시험 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채용시험 가점 기준

	구분	부가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사회 형평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각 전형단계별
가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 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별표 2]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 피해자 :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 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 예 :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
-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현원 외 인력으로 허용

[별지 제1호 서식]

서류전형 채점표(예시)

응시직종	응시번호	성명	

평정요소	배점	득점	비고
자기소개서	25		
직무능력	25		
자격증	25		
경력	25		
합계	100		

위원서명 성명: (서명)

※ 법원별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렬ㆍ직종에 따라 서류전형 채점표를 재구성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면접시험 채점표(예시) 응시직종 응시번호 성명 평정요소 배점 득점 비고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0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20 의사발표의 20 정확성과 논리성 정신자세 및 태도 20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20 합계 100

(서명)

※ 법원별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렬 · 직종에 따라 서류전형 채점표를 재구성할 수 있음

성명:

위원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서약서

채용구분	()공무조	[()기간제		전형구분	면접/	시험
본인은 공무?	직 등 근로자 면접시험	위원으로 위촉(임명	g)되면서 ¤	가음 사항을 준 ^소	수할 것을 서약합	남니다.
1. 면접시험	위원 <u>으로</u>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지	- 발표일끼	l지 누설하지 읺	는다.	
2. 심사과정이	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	체의 사실에 대하여	여 누설하지	지 않는다.		
3. 응시자와의	리 친인척관계 등 제척/	나유가 있는 경우 민	변접시험위	원의 회피를 신	청한다.	
4. 기타 공정	한 시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	위도 하지	않는다.		
본인은 위 시	본인은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법	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면접시험위원 회피 신청서

□채용부서:□채용직렬·직종:□회피 대상자:명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유
□ 회피 사유			
(예시) 해당 응시자는 심사· 평정에 참여하지 않		사유에 해당하여 공정한 채	용을 위하여 해당 응시자의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법원 홈페이지 관리 ·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14호 2024. 12. 26. 결재)

법원 홈페이지 관리 ·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1]

①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게이트웨이)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메인화면		기획조정심의관	기획, 내용관리

② 대법원 홈페이지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메인화면		기획조정심의관	기획, 내용관리
재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수석재판연구관실, 공보관실	등록/수정
	주요판결	수석재판연구관실, 법원도서관	등록/수정
	공개변론	민사과, 형사과	내용관리, 동영상 자료 제공
	선고 영상	민사과, 형사과	동영상 자료 제공
	재판 절차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형사지원 심의관실, 특별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재판기록 열람 · 복사 예약 안내	종합민원과	내용관리
소식	대법원 새소식	각실·국·과	새소식 자료 제공
	대법원 포토뉴스	공보관실	등록/수정
	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공보관실	등록/수정
	대법원장 연설문	대법원장 비서실	등록/수정
	대법원장 동정	대법원장 비서실	등록/수정
청사안내	청사 소개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청사 갤러리	총무담당관실	등록/수정
	법원전시관	공보관실	내용관리
	찾아오시는 길	총무담당관실	내용관리
	보안검색	대법원보안관리대	내용관리
견학안내	단체견학안내	공보관실	내용관리, 견학신청접수
	단체견학신청	공보관실	내용관리, 견학신청접수
대법원소개	대법원장(인시말, 약력, 역대 대법원장)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등록/수정
	대법관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대법원 역사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대법원 기능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대법원의 구성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대법원의 기관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③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메인화면		기획담당관실	기획, 내용관리
소식	새소식	각실·국·과	새소식 자료 제공
	포토뉴스	공보관실	등록/수정
	전국법원 소식	각급법원	등록/수정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공보관실	등록/수정
	사법교류	국제심의관실	등록/수정
	법원동정	공보관실	등록/수정
	법원공보	공보관실	내용관리
	뉴스레터	공보관실	등록/수정
	이메일클럽	사법정보화실	접수, 처리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각급법원	등록/수정
	판례속보	법원도서관	등록/수정
	언론보도판결	공보관실	등록/수정
공고	계약입찰공고	시설담당관실, 기술담당관실, 재무담당관실, 각급법원	등록/수정
	입법예고	법무담당관실	등록/수정
	공시송달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내용관리
	회생·파산	특별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무죄판결공시	형사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증권관련집단소송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공시최고·제권판결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민사지원 제2심의관실	내용관리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	사법등기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보관금조회안내	사법정보화실	등록/수정
	회생·회사 M&A 안내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내용관리, 등록/수정
	회생・파산 자산 매각 안내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내용관리, 등록/수정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윤리감사관실	내용관리, 등록/수정
정보	사건검색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특별지원 심의관실, 형사지원심의관실	정보제공범위 관리
	공탁사건검색	사법등기심의관실	내용관리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종합민원과	접수, 처리
	판결서 인터넷열람	재판사무국	내용관리, 접수, 처리
	판결서 방문열람	법원도서관	접수, 처리
	사법통계	사법정보화실	등록/수정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정보	최근법령정보	법무담당관실	등록/수정
	개인정보파일	사법정보화실, 각급법원	등록/수정
	예산집행 실명제 현황	예산담당관실	등록/수정
	전국법원・등기소정보	사법정보화실	등록/수정
	관련 사이트	사법정보화실	등록/수정
참여	소통의 장(법원에 바란다)	종합민원과, 각 실·국·과	접수, 전달, 처리
	소통의 장(부조리신고센터)	윤리감사관실	접수, 처리
	소통의 장(불합리한 법령신고센터)	법무담당관실	접수, 처리
	소통의 장(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담당관실	접수, 처리
	소통의 장(홈페이지개선의견)	사법정보화실	접수, 처리
	정보공개청구	종합민원과	접수, 처리
	행정심판청구	법무담당관실	접수, 처리
	국민참여재판	형사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자료	홍보동영상	기획담당관실	동영상 자료 제공
	정책홍보자료	공보관실	내용관리
	사법부 간행물	각실·국·과	내용관리
	법교육교재	사법정책심의관실	등록/수정
	사법발전재단자료	복지후생담당관실, 시법정책심의관실	내용관리
	정책연구용역자료	법무담당관실	등록/수정
	사법연감	법무담당관실	내용관리

④ 사법부 소개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사법부소개	법원의 조직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법원의 구성원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법원의 직무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사법의 정보화	사법정보화실	내용관리
	사법의 국제화	국제심의관실	내용관리
	사법의 역사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학술지『사법』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등록/수정, 내용관리

⑤ 전자민원센터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절차안내	민사, 가사, 행정, 특허, 개인 파산/회생, 강제집행, 신청, 소년보호, 가정보호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민사지원 제2심의관실, 특별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형사, 국민참여재판 일정	형사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기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과	내용관리
	공탁	사법등기심의관실	내용관리
재판지원	소송구조제도,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국선변호인선정제도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특별지원 심의관실, 형사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장애인사법지원	사법정책심의관실	내용관리
사건검색	나의사건검색, 사건구분안내, ARS안내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특별지원 심의관실, 형사지원심의관실	정보제공범위 관리
민원안내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민사지원 제2심의관실, 형사지원심의관실, 특별지원심의관실	등록/수정
	양식모음(가족관계등록, 후견 등기)	가족관계등록과	등록/수정
	양식모음(공탁)	사법등기심의관실	등록/수정
	양식모음(정보공개청구)	종합민원과	등록/수정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민사지원 제2심의관실, 형사지원심의관실, 특별지원심의관실	등록/수정
	자주묻는질문(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과	등록/수정
	자주묻는질문(다른법원상담 사례보기)	각급법원	등록/수정
생활속의 법이야기	양보와 타협의 민사조정 등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각급법원 총무과	내용관리

⑥ 영문 홈페이지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전체	전체	국제심의관실	내용관리
	Decisions	법원도서관	내용관리

⑦ 어린이 홈페이지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대법원과 사법부	사법부 소개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사법부 조직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대법원장과 대법관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대법원 둘러보기	공보관실	내용관리
	동영상보기	기획담당관실	동영상 자료 제공
법원이 하는 일	법원의 필요성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역할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종류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발전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법관이 되려면	법관이란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법관의 자격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법원공무원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그 외 법원관계인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재판의 종류와 절차	재판의 종류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형사지원 심의관실, 특별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재판청구권 보장	사법정책심의관실	내용관리
	법률구조제도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내용관리
	동화 속 법률이야기	공보관실	내용관리
법교육	애니메이션	사법정책심의관실	동영상 자료 제공
	법교육교재	사법정책심의관실	내용관리
알쏭달쏭 OX 퀴즈		사법정책심의관실	내용관리
어린이기자단	어린이 소식지	공보관실	내용관리

신법령 목록 (2024. 12. 1. ~ 2024. 12. 15.)

법률

법률제2053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886	2024. 12. 03.	5
법률제20535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일부개정법률	"	"	7
법률제20536호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0
법률제20537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11
법률제2053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	"	12
법률제20539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14
법률제20540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	15
법률제20541호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	18
법률제20542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0
법률제20543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	"	21
법률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	"	23
법률제20545호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25
법률제20546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	26
법률제20547호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29
법률제20548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	31
법률제205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	"	33
법률제2055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	"	40

법률제2055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20886	2024. 12. 03.	42
법률제2055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44
법률제2055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45
법률제2055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48
법률제20555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	"	"	49
법률제20556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50
법률제20557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	"	"	51
법률제20558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	"	52
법률제20559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	"	54
법률제20560호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	"	56

조약

조약제2588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 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 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 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 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20887	2024. 12. 04.	4
조약제2589호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 레임워크에 관한 협정	"	"	12
조약제2590호	청정경제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 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	"	30
조약제2591호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20891 (별권)	2024. 12. 10.	2
조약제2592호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기후 변화 협력을 위한 협정	"	"	33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5020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886	2024. 12. 03.	57
대통령령제35021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8
대통령령제35022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	"	60
대통령령제35023호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2
대통령령제3502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64
대통령령제35025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 정령	"	"	65
대통령령제35026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일부개정령	"	"	66
대통령령제35027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일부개정령	"	"	70
대통령령제3502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 부개정령	"	"	72
대통령령제35029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 부개정령	"	"	74
대통령령제35030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	"	75
대통령령제35031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 정령	"	"	76
대통령령제35032호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 부개정령	"	"	77
대통령령제3503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 개정령	"	"	78
대통령령제35034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일부개정령	"	"	79
대통령령제3503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 부개정령	"	"	82

대통령령제35036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일부개정령	20886	2024. 12. 03.	83
대통령령제35037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일부개정령	"	"	87
대통령령제35038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8
대통령령제35039호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	"	107
대통령령제35040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9
대통령령제35041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1
대통령령제35042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2
대통령령제3504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 정령	"	"	113
대통령령제35044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	"	"	115
대통령령제35045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16
대통령령제35046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	"	"	118
대통령령제35047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0
대통령령제35048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1
대통령령제35049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891 (별권)	2024. 12. 10.	46
대통령령제35050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	"	47
대통령령제35051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령	"	"	50
대통령령제35052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7
대통령령제35053호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개정령	"	"	68

대통령령제350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891 (별권)	2024. 12. 10.	75
대통령령제35055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6
대통령령제35056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7
대통령령제35057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8
대통령령제35058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개정령	"	"	79
대통령령제3505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0
대통령령제35060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1
대통령령제35061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 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85
대통령령제35062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 훈련규정 일부개정령	"	"	87
대통령령제35063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8
대통령령제3506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0
대통령령제35065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	"	91

총리령

총리령제1994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86	2024. 12. 03.	122
총리령제199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0
총리령제1996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2
총리령제1997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 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89	2024. 12. 06.	5
총리령제1998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92	2024. 12. 11.	4

부령

국토교통부령제1412호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85	2024. 12. 02.	4
문화체육관광부령제574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3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86	2024. 12. 03.	1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39호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7
기획재정부령제1091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	"	138
기획재정부령제1092호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물품관 리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	"	146
농림축산식품부령제69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7
법무부령제1084호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2
산업통상자원부령제587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2
여성가족부령제212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	"	170
해양수산부령제706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	"	172
산업통상자원부령제58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87	2024. 12. 04.	1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3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88	2024. 12. 05.	4

국토교통부령제1414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20888	2024. 12. 05.	7
농림축산식품부령제694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
보건복지부령제107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89	2024. 12. 06.	6
행정안전부령제527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
보건복지부령제1074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90	2024. 12. 09.	4
행정안전부령제528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20891	2024. 12. 10.	3
환경부령제1133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일부	"	"	5
보건복지부령제1075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92	2024. 12. 11.	10
해양수산부령제707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 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
행정안전부령제526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	"	"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40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20893	2024. 12. 12.	4
문화체육관광부령제575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	"	5
행정안전부령제52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
환경부령제113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7
환경부령제1135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	"	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41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20894	2024. 12. 13.	4



2025.01.01.**제 1703 호**

Supreme Court of Korea

